

◎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-72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3일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대체품 개발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미비한 모터달린보드*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에 관리 수준 하향 조정**

* 바퀴가 달린 보드에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제품

** 「전안법」 시행규칙 예고고시('24.1.11.~2.20.) 완료

-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정비

2. 주요 내용
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(現 공급자적합성 확인 → 안전기준준수)에 의한 운영요령 개정(운용요령 [별표6], [별표7],[별표14],[별표15])

-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“ch” 를 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재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문구 삭제(운용요령 [별표8])

*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초변경부터 A→B→C 등으로 코드를 변경하여 운영중으로 최초발급 코드와 연관성 확인이 가능하여, 해당문구 불필요

붙임 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」 개정(안)

2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」 신구조문대비표

3.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

4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」 개정(안)에 대한 의견(양식)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

3. 의견제출

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(043-870-5455, yekim79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(우 27737)

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
- 전화 : 043-870-5455

- 이메일 : yekim79@korea.kr